

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위원 한화진 (환경부장관)
연 월 일	2023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개정이유

특례시의 장에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 사무 위임 및 환경개선 부담금 채납액의 강제징수 방법 개선 등의 내용으로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이 개정(법률 제19558호, 2023. 07. 18. 시행)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 결과의 기록·관리,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 서식 정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 결과의 기록·관리 의무를 특례시의 장에게 부여함(안 제5조)
- 나.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 관련 서식 정비(안 별지 제1호, 제2호의2, 제2호의3, 제3호, 제4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전단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”을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(이하 “특례시”라 한다)의 장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을 “시·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특례시의 장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중 “지방세 체납처분의 예”를 “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며, 같은 뒤쪽 제2호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특례시의 장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중 “지방세 체납처분의 예”를 “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의2서식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

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시의 장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”를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·특별시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의3서식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시의 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시장”을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시의 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시의 장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”를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·특별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
제5조(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 결과의 기록·관리)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</u>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개선부담금의 부과·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<u>시·도지사는</u> 개선부담금의 부과·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·관리하는 것을 같음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, 디스켓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매체에 기록·저장·관리할 수 있다. [별지 제1호]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식 1. 분할 납부고지서 (앞쪽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수납날짜도장</td><td style="width: 80%;">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인 </td></tr> </table> (뒤쪽)	수납날짜도장	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인	제5조(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 결과의 기록·관리)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</u>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(이하 “특례시”라 한다)의 장은 ---. --- <u>시·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[별지 제1호]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식 1. 분할 납부고지서 (앞쪽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수납날짜도장</td><td style="width: 80%;">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례시의장 인 </td></tr> </table> (뒤쪽)	수납날짜도장	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례시의장 인
수납날짜도장	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인				
수납날짜도장	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례시의장 인				

유의사항

1. 납기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 제20조에 따라 3%의 가산금이 추가되며,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.

2. 일시 납부고지서

(앞쪽)

수납날짜도장	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인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
--------	--

(뒤쪽)

유의사항

1. 납기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 제20조에 따라 3%의 가산금이 추가되며,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.

[별지 제2호의2] 환경개선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처리절차

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

[별지 제2호의3] 환경개선부담금 분할 납부(허용, 불허용) 통지서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직인

유의사항

1. 납기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 제20조에 따라 3%의 가산금이 추가되며,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.

2. 일시 납부고지서

(앞쪽)

수납날짜도장	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인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례시의장
--------	---

(뒤쪽)

유의사항

1. 납기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 제20조에 따라 3%의 가산금이 추가되며,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.

[별지 제2호의2] 환경개선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특례시의장 귀하

처리절차

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·특례시

[별지 제2호의3] 환경개선부담금 분할 납부(허용, 불허용) 통지서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특례시의장

직인

[별지 제3호] 환경개선부담금(조정 부과, 환급) 통지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<u>도지사</u> ·<u>특별자치도지사</u>·<u>특별자치</u> <u>시장</u> 직인 [별지 제4호]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 도지사·<u>특별자치도지사</u> 귀하 처리 절차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<u>특별자치도</u>	[별지 제3호] 환경개선부담금(조정 부과, 환급) 통지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<u>특별자치시장</u>·<u>도지사</u>· <u>특별자치도지사</u>·<u>특례시</u> <u>의장</u> 직인 [별지 제4호]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 도지사·<u>특별자치도지사</u>·<u>특례시의장</u> 귀하 처리 절차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<u>특별자치도</u>·<u>특례시</u>
--	---